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신달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4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

박주용 의원, 최재규 의원

1. 제안이유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기준 완화(별표 1중 제1호아목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 단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표 1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의 적용례) 별표 1 중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【별표 1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설 사 용 료 (제6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용어의 뜻 가. ~ 사. (생략) 아. <u>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 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 성원을 말한다.</u> 자. ~ 차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【별표 1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설 사 용 료 (제6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용어의 뜻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<u>“다자녀가정”이란 자녀 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 다. 단, 최연소 자녀가 18 세 이하여야 한다.</u> 자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